

제 1414 호
1988.6.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용
편집인 : 공 보 관 윤 두
전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88 제 4 회 착상심사결과 3
물품관리건환소요조회 8

◎ 조 례
제 2359 호 :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 10
제 2360 호 : 서울특별시교통명함명가대상사업및시설지역범위에관한조례 10

◎ 규 정
제 571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개정 11

(이면계속)

상																				
하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12

㉔	규 칙	
	제 2252 호 :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 증개정규칙	12
	건설공사품질시험비용징수개정	16
㉕	훈 령	
	제 77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전운영규정증개정규정	21
㉖	고 시	
	제 494 호 :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21
	제 49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22
	제 498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22
	제 50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23
	제 512 호 : 보호수지정고시	26
	제 522 호 : 쇠고기, 돼지고기연동가적및쇠고기기준연동가적표고시	27
	제 52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27
㉗	구 고 시	
	제 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고시	28
	제 143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고시	28
	제 12 호 :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29
㉘	공 고	
	제 1 호 : 회계관제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30
	제 346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금지	30
	제 348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31
	제 352 호 : 투기과열지구공고	32
	제 362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을위함공람공고	32
	제 363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영업금지	32
	제 365 호 : 비료생산업일부품목허가취소공고	33
	제 367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행정처분	33
	제 368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34
	제 371 호 :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 (안) 입법예고공고	34
	제 380 호 : 다동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위함공람공고	39
㉙	사 령	

공 문 시 행

서 울 특 별 시

시정 01226-139

(731-6151)

1988. 6. .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88. 제 4 회 착상심사결과

1. '88년 제4회 시정발전 착상심사결과 및 시상대역등 변경과 같이 사달하니 각급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적극 권장하여 시정발전 착상제도 운영에 많은 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첨 부 : '88년 제 4 회 채택 착상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 관리실장 전결)

수신처 : 서울시 산하전기관

'88 제 4 회 착상심사결과

◎ 채택착상내용

착상등급	착 상 내 용	비 고
동 상	<p>○ 접수번호 : 4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H 스티븐사형 부착물제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콘크리트벽, 벽돌, 부력, 전주, 가로등 육교등에 부착된 벽토제거기는 물을 뿌려 손으로 제거하였으나 벽보를 첩부할 때 분드류가 첨가된 물을 사용하고, 인쇄잉크에 방수성수지가 첨가되어 수작업으로 제거하기 어려움이 많았으나 · SIH 스티븐사형 제거기를 개발하여 소형증기 발생기에서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켜 내열정호스트 스티븐사창치에 연결 뜨거운 증기를 광고물에 분사하여 단시간내에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였음.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비저렴 (1 대당) : 147,000 ~ 173,000 원 · 변면재질 및 사용을 종류에 관계없이 완전 제거 가능 · 변면원형 유지 및 동시배척 효과 · 계절에 관계없이 전원후 사용 가능 <p>착상자 : 보건환경연구소 보건연구관 김민영 별정 6급 최을섭</p>	<p>표창장및 시상금 100 만원</p>
장 려 상	<p>○ 접수번호 : 3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틀게이트 한우식 기와로 구조개선 	<p>표창장및 시상금</p>

착상등급	착상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각 유료도로 Toll Gate 가 단순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는바 • 콘크리트구조물상단에 우리의 전통양식인 청기와식자붕으로 개선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현대미를 조화시켜 서울이 역사적고도이고 문화도시임을 상징 <p>착상자 : 종로구 기획감사과 지방행정주사로 이경열</p>	30 만원
장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386 - 자동차등록변경 신청제도개선 • 주민등록 진출입시에는 자동차 검사장등의 주소변경 신고를 피거일로부터 24 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기간내에 이행치 않고있어 과태료부과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 주민등록 진출입신고서 양식에 자동차 주소변경 란을 신설하여 주민등록과 자동차의 주소변경처리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식 비치하여 업무간소화 • 신고기일 경과로인한 민원발생 예방 <p>착상자 : 종로구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권진</p>	효장강및 시상금 30 만원
장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번호 : 430 - 이륜소형자동차 대량 간소화 • 이륜자동차등록 및 말소업무처리시 사용하는 각종대장이 일반자동차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업무량이 많고 복잡하여 대장을 통폐합하여 업무간소화 • 등록시 사용하는 대장 7 종을 4 종 (3 종폐지) 으로 말소시 사용하는 대장 3 종을 2 종 (1 종 	

작성등급	작성 내용	비고
	<p>폐지)으로 통폐합 사용토록 개선 (효 과) • 대장간소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능률개고 작성자: 권악주 봉천본동 지방행정서기 김태수</p>	
<p>장려상</p>	<p>○ 접수번호: 449 - 가출인(부랑인, 미아, 행리병자)보호시설 수용절차 개선 • 부랑인, 미아, 행리병자들 가출인이 발생되면 관할구청이나 경찰에 인계되어 간단히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다시 보호시설에 연계 수용되고 있는바, • 가출인 최초접수기관(구경동)은 가출인 신병접수 즉시 개인별사진 촬영을 제도화하여 개인별 카드작성 관리하므로 열고자의 가출인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선 (효 과) • 사진촬영비치하므로 열고자 확인시 크게 기여 • 개인별카드작성 관리로 신원피악 용이 작성자: 영등포구 기획감사과 지방행정서기 최옥현</p>	<p>표창장 및 시상금 30만원</p>
<p>노력상</p>	<p>○ 접수번호: 381 - 우편요금결약 및 자동차 소유주 주소이전 신고 불이행자지권 처리 • 주민등록주소 이동할때 자동차등록주소 이전신고를 24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바 • 자동차 주소이전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울 시내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거주지에서 신거주지로 우편송달후 퇴거신고 사본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로 통보하면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는 직권정리하고 타시도 전출자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행정체고 한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p>	<p>표창장 및 시상금 10만원</p>

작성등급	작성내용	비고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송달로 절감 <p>작성자: 관악구 세무2과 지방행정서기 류재찬</p>	
노력상	<p>○ 접수번호: 46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버스 도심지 정차 안내개선 현행 시내버스 정류장을 적색, 청색으로 구분하고 버스도 적색, 청색으로 구분 주차시키고 있는바 버스내부에는 노선도가 적첩되어 있으나 적색, 청색차량임을 표시하는 제침줄이 없으므로 도심지에서 하차할때는 당황하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노선도열에 "이차는 적색 또는 청색차량입니다" 라고 표시하여 안내토록 개선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내부에서 해당차량이 적색 또는 청색, 차량임을 알수있어 시민불편 사항 해소 <p>작성자: 시민운동강 지방전기지원 육호원</p>	표량장 및 시상금 10만원
노력상	<p>○ 접수번호: 4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등록 변경과 자동차세 부과 주민등록주소가 변경되었으나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많은바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불이행차량에 대하여는 세무담당자 북명서와 주민등록 퇴거신고서사본을 신거주지 세무2과에 송부하면 신거주지 구청에서는 고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고 자동차 등록 변경을 지적처리하고 과태료부과토록 개선 <p>(효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우편요금 절약 무적차량 발생 예방 <p>작성자: 도봉구 미아7동 지방행정서기보 신의영</p>	

“뜻도아 하나로 힘모아 새계로”
(관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건지 01754- 731-6381 1988.6.9.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물품관리 전환 소요 조회

1. 건축지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88.6.25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것임.

가. 관리전환대상 물품명세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취득년월일	장부가격	상태
7110-003	책상	양수철재 (서기관급이상)	1	미상	18,000	중고
7110-005	의자	회전용 (서기관급이상)	1	"	16,800	"
7110-005	"	4B	5	"	23,000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지도과장전결)

수신처: 서울시 산하전기관

불 용 결 정 조 서

검부 분류	품등 번호	품목의 실명	규격 (계좌 번호)	단 위	수 량	가 격	취 득 년월일	상 태	불 결 사 유	불 결 년월일	회 계 명	불 결 소 재 기	보 관 처 명	처 분 의 결
4530- 013	전포기	아스콘 생산에 따른 시험 기구	40× 40× 40cm	대	1	132,000	미상	중고 (유리외)	용 량 부 족	'88.6	일 반 회 계	서울시 건설 자재 사업소	서울시 건설 자재 사업소	판 리 전 환
6540- 336	천칭 시울	"	500g 500mg	"	1	20,000	"	"	"	"	"	"	"	"
6540- 113	"	"	100g -100mg	"	1	17,600	"	"	"	"	"	"	"	"

제1414호 시

부 1985.6.17 54-8

조 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 6. 13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2359 호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 2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 1 항중 “전항”을 “제 1 항”으로 한다.

2. 기초과학부문

2 의 2. 생명과학부문

제 5 조제 2 항, 제 6 조제 2 항 및 제 8 조제 2 항중 “전항”을 각각 “제 1 항”으로 하고, 제 7 조제 3 항중 “전항”을 “제 2 항”으로 한다.

제 10 조의 2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제 2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중 제 10 호 및 제 11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과학부문: 천문학, 물리학, 화학, 지학; 수학, 기상학등 기초과학분야

2 의 2. 생명 과학부문: 의학, 약학, 생물학등 생명과학 분야

10. 출판부문: 출판, 인쇄등 출판문화분야

11. 건설부문: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기능등 건설분야

제 11 조제 2 항중 “전항”을 “제 1 항”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전항”을 각각 “제 2 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2360 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 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 조 제 1 항, 동법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및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도심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 대문주변지역: 사직로, 율곡로, 왕산로, 다산로, 왕십로, 뚝배기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지정 정하고 있는 내지
2. 신촌지역: 경의선 철도, 경의선 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 대흥

로, 용산선 철도, 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내지

3. 영등포지역: 경인로, 선유로, 당산로, 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내지

4. 영등지역: 압구정로, 연주로, 역삼로, 효경로, 반포로, 시천로 및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내지

5. 잠실지역: 올림픽로, 석촌호수길, 삼학사길, 잠실길, 올림픽로, 송파대로, 신천동 7번지 11호, 7번지 8호 11번지 7호를 잇는 도로, 올림픽로, 위례상길 및 백제고분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내지

6. 천호지역: 인사로, 구선면길, 천호동 421번지와 성내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 둔촌로, 성내동 415번지와 성내동 108번지를 잇는 도로 및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내지

7. 청량리지역: 재기로, 배봉로, 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가도에 직접 접하고 있는 내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정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8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김용래 (인)

① 서울특별시훈령제 671 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일제교육상 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일제 교육상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공무원교육상 운영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제6조, 제3항 및 별표중 "일제교육상"을 "공무원교육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8.6.13

서울특별시장 김용배

◎서울특별시규칙제 2252 호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원에게는 별표 3 및 별지 4 에서 규정함비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 적용한다. 다만,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와 각단체의장은 경호봉.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1호봉, 교향악단, 관현악단의 악장은 2호봉, 자단체 기획담당은 3호봉, 지도단원은 4호봉으로 한다.

제 10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 1 항의 예능연구보조직의 지급기준은 교향악단 및 기타 단체는 능력에 따른 등급정원제를 적용한다. 다만, 상임지휘자, 지휘자, 단장, 악장, 기획담당 및 지도담당은 등급실사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급 여 월 액

(별표 2)

(단위: 원)

호봉	예술단체	비고	호봉	예술단체	비고
9	763,000		9	623,000	
1	712,000		10	615,000	
2	703,000		11	603,000	
3	690,000		12	590,000	
4	680,000		13	578,000	
5	667,000		14	562,000	
6	657,000		15	547,000	
7	647,000		16	534,000	
8	636,000		17	521,000	

호 봉	예 술 단 체	비 고	호 봉	예 술 단 체	비 고
18	506,000		27	363,000	
19	488,000		28	330,000	
20	473,000		29	303,000	
21	458,000		30	267,000	
22	450,000		31	236,000	
23	434,000		32	219,000	
24	417,000		33	197,000	
25	408,000		34	174,000	
26	385,000				

학 력 별 초 입 호 봉 확 정 기 준

(별표 3)

학 력	교 향 악 단 및 기 타 단 체
대 중 이 상	32 호 봉
고 중 기 타	34 호 봉

호 봉 별 승 급 소 요 년 한

(별표 5)

구 분	승 급 기 간	해 당 호 봉
교 향 악 단	재직 1년	32호봉부터 22호봉까지
기 타 단 체	재직 1년 6월	21호봉부터 3호봉까지

(별표 6)		직책수당			단위: 원
구	분	인원	월적채수량	비고	
교향악단	삼임지휘자	1	164,000		
"	지휘자	1	143,000		
"	악장	2	129,000		
"	총무	1	122,000		
"	제1수석	18	105,000		
"	제2수석	12	90,000		
"	부총무	2	60,000		
"	악보	2	44,000		
오케라단	단장	1	164,000		
"	기획담당	1	122,000		
"	총무	1	122,000		
소년소녀교향악단	지휘자	1	164,000		
"	총무	1	122,000		
"	악보	1	44,000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1	164,000		
"	악장	2	129,000		
"	총무	1	122,000		
"	수석	6	105,000		
"	부수석	6	90,000		
"	악보	1	44,000		
기타예술단체	지휘자, 단장	4	164,000		
"	지도단원	6	115,000		
"	기획담당	3	122,000		
"	수석	10	105,000		
"	부수석	10	90,000		
"	총무	4	122,000		
"	악보	2	44,000		

여흥지구토건비월액

(표 7)

단위: 원

순 번	요 항 목 단			기 타 액 수 단 체		
	인 원	실 액	비 고	인 원	실 액	비 고
1	1	660,000	상임자퇴자	1	660,000	오폐라단상
2	1	636,000	지 회 자	6	421,000	기타단체장
3	2	615,000	약 강	2	396,000	약 강
4	18	549,000	제 1 수 석	26	365,000	기 획 담 당 지 도 단 원 수 석
5	12	462,000	제 2 수 석	16	300,000	부 수 석
6	11	375,000	단 원	28	240,000	단 원
7	10	306,000	"	20	185,000	"
8	13	240,000	"	24	135,000	"
9	12	197,000	"	26	120,000	"
10	12	177,000	"	24	114,000	"
11	14	153,000	"	28	112,000	"
12	14	132,000	"	28	100,000	"

건설공사품질시험비용진수계정안

(단위: 원)

시 험 구 분	시 험 종 목	현 행	개 정
흙의물리시험 (9)	합 수 량	810	4,300
	비 중	1,960	9,600
	액 성 한 계	2,540	14,900
	소 성 한 계	1,850	11,400
	수 축 한 계	2,080	11,100
	합 수 당 량	1,850	10,000
	투 수	14,090	53,100
	200 빈채 통과량	1,960	9,600
	입 도	13,170	53,000
흙의연합시험(12)	일 축 압 축	7,970	36,000
	직접급속진단	11,550	46,000
	압밀급속진단	27,720	71,400
	완 축 전 단	63,990	165,500
	비배수·비압밀삼축압축	20,330	103,200
	압밀비배수삼축압축	58,440	317,100
	압밀배수삼축압축	82,120	500,100
	압 밀	38,120	304,900
	나 점	10,860	43,900
	틀 밀 도	2,560	33,900
	흙시멘트배합설계	93,210	414,200
	실내 씨·비·알	23,220	74,400
	지내력시험 (4)	현장 씨·비·알	1,850

시 험 구 분	시 험 종 목	현 행	개 정
지내력시험(4)	도로평판재하	2,430	51,600
	건축평판재하	7,280	76,700
	말뚝재하	11,550	138,400
말 재 (14)	체 가 른	1,730	6,800
	비중, 흡수	1,730	6,500
	단위중량, 빈틈율	1,850	9,000
	안 정 실	6,700	19,900
	마 브 율	2,770	13,900
	표 면 수 량	1,040	10,400
	200번체통과량	1,160	7,100
	유기불순물	1,620	9,000
	점토덩어리	1,390	18,800
	비중 2.0 에 뜨는 것	11,550	14,700
	연 석 량	1,620	12,100
	염 화 물	1,390	17,500
	강열 감 량	1,730	9,200
실피카함량	6,810	20,700	
콘크리트맞혼화 개 (10)	배합설계 (시멘트품질 시험별도)	56,830	305,800
	공시체제작	8,670	30,600
	슬 럽 브	460	2,900
	공기함유량	1,040	10,500
	압축 강 도	2,070	10,300
	휨 강 도	4,430	12,100
	인장 강 도	2,430	7,900
	공시체꺾임	1,380	3,800
	비 파 과	580	5,800
	탄성파속도	1,740	4,900
콘크리트제품(5)	외관 및 치수	-	1,900
	압축 강 도	1,160	6,600
	휨 강 도	1,160	11,100
	흡 수 율	-	3,600
	관외압강도	1,730	19,600

시 설 구 분	시 설 종 목	원 행	개 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11)	백 합 설 계	46,080	200,400
	마 살 안 정	1,500	11,900
	아스팔트한량	15,130	35,800
	추출체가름	1,850	12,400
	외막박티	3,810	11,900
	마살공시체제작	3,810	7,100
	밀 단 노	230	3,700
	견 단 상	1,850	11,300
	교 아 채 취	1,390	10,400
	벤첼만변위	2,890	13,300
미끄럼저항	1,730	9,200	
석분딛석재(4)	비 중, 흡 수	4,500	8,300
	슈 분	2,190	9,600
	업 도	2,540	11,100
	압축강도(수침)	1,040	7,700
시 멘 트(3)	시 멘 트 품 질	-	152,300
	산 화 나 트 품	6,120	22,100
	산 화 칼 습	4,620	25,300
에폭시수지 및 합성수지재료(5)	비 중	1,040	3,000
	가 사 시 간	-	4,800
	인 장 강 도	2,660	7,600
	압 축 강 도	3,120	7,200
내약품성(중목당)	5,080	7,000	
에폭시수지물탈 (4)	비 중	-	3,600
	인 장 강 도	-	12,900
	가 사 시 간	-	6,800
	내약품성(중목당)	-	12,160
수 질 시 험	탁 도	2,190	5,500
	페 하 (pp)	2,310	2,100
	증 발 산 유 물	1,390	8,900
	황 산 염	4,270	17,400
	경 화 륜	1,620	11,500

시험구분	시험종목	원행	개경
플라스틱 (5)	회분	-	9,300
	티인강도	1,040	3,900
	압축강도	2,660	9,600
	내약성	3,120	9,000
	마모	5,080	7,800
여과재료 (6)	비중	-	11,100
	강열감량	-	16,500
	염산가용물	-	19,300
	체리카함량	-	6,700
	실리카함량	-	20,700
시멘트기와(3개 기준)(3)	마모	-	2,600
	외관 및 치수측정	360	3,100
	회분강도	1,380	10,300
보통벽돌 (5개기준)(3)	회분	2,430	6,600
	형상 및 치수	600	2,500
	압축강도	2,900	5,000
도료(39)	회분	4,050	6,400
	비중	1,950	4,500
	작업성	1,500	4,500
	건조시간	1,620	3,600
	도막의상태	1,270	5,200
	용기중의상태	810	2,600
	체분석	1,500	4,800
	은폐력	1,730	6,500
	내굴곡성	2,660	6,600
	저장안정성	1,850	11,700
	내알카리성	4,390	5,900
	가열간분	1,730	5,800
	용제분용	1,620	6,300
	내수성	1,730	6,200
	내염수성	2,080	7,300
	축진내후성	9,700	20,700
	내충격성	2,080	9,500
내마모성	5,310	15,400	
광변도	1,730	7,500	

시 험 구 분	시 험 종 목	원 행	개 정
도 료 (39)	황 산 방 사 율	1,500	8,400
	내 습 성 설	2,890	9,500
	수 분 분 리	1,160	6,500
	주 리 등 도	2,540	8,900
	주 등 도	1,160	5,600
	흡 수 성	2,660	5,800
	연 화 도	1,730	7,800
	가 사 시 간	1,390	6,800
	내 산 성	2,310	7,900
	내 회 발 유 성	3,230	8,000
	열 안 장 성	1,350	25,400
	냉 동 안 권 성	1,390	4,500
	스트리킹 성	350	2,000
	불 권 발 선 색	2,310	5,200
	광택 도 (60°)	920	3,900
	인 화 성	1,040	3,400
	스커밍	460	2,400
	스프레이 작업	1,160	4,900
냉 색	350	2,200	
점 적	350	1,500	
점 도	560	2,200	
시멘트벽돌 (2)	외관 및 치수 측정	600	2,800
	압축 강도	2,900	7,100
목재 (일반) (6)	비 중	350	6,400
	결 균 연 륙 륙	250	3,900
	함 수 륙 륙	350	5,500
	흡 수 륙 륙	460	9,400
	압 축 장	810	5,400
		1,040	7,900
시멘트방수재 (액체분, 말) (5)	비 중	1,620	5,600
	응 경 시 간	2,890	15,600
	압 축 강 도 비	5,200	20,800
	안 정 도 비	2,540	8,000
		4,640	15,700

훈 령

공 포 령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매점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1988. 5.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최 열 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훈령제77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명칭 및 위치) 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동부매점”란 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북부지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북부지점*

북부교육구청구내

제 5 조 제 2 항중 “공무원연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위원회의”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94 호

민영주택임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중랑구망우동 226 번지의 9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 . .

서울특별시 장

1. 사업명: 민영주택임주자모집공고승인
2. 사업주체: 경남기업(주) 대표 박근호
3. 사업시행지
 - 가. 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26 번지의 9 필지
 - 나. 대지면적: 13,600.55㎡
 - 다. 규모: 아파트 5층 6개동 250 세대 및 상가 1개동

민영주택임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1. 사업주체: 경남기업(주) 대표이사 박 근 호
2. 위치 및 규모
 - 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26 번지의 9 필지
 - 규모: 아파트 5층 6개동 250 세대 및 상가 1개동

3. 평형별 분양면적 및 세대수 (단위: ㎡)					
평형	신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세대당 토지면적	세대수
96.6436	81.905	14.7386	96.6436	67.63	60
72.3319	59.940	12.3919	72.3319	50.60	120
64.4431	52.710	11.7331	64.4431	45.08	70

4. 공급대상 부대부리시설명 및 규모 관리사무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5. 공급제외대상 (일반분양시설) 부리 시설명 규모	
6. 평형별 분양가격 (천원)			
평형	분양가격	평당가격	비고
96.6436	31,970	1,268	
72.3319	27,743	1,268	
64.4431	25,718	1,268	

<p>◎서울특별시고시제 497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 5. 3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주체 : 광동보구여의도동 14-14</p>	<p>정확건설㈜ 대표 옥만수</p> <p>3. 사업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은평구중산동산 10-22 외 5필지 나. 대지면적 : 9,537 다. 용도 : 연립주택 라. 규모 : 3층 6동 179 세대상가 1동</p> <p>4. 사업시행기간 : 1988.3 ~ 1988.12</p> <p>◎서울특별시고시제 498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서울특별시고시 제 864 호 (85.12.20)</p>
---	---

로 고시한 아래사람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제적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6. 1
서울특별시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과 통
사업주체	도봉구수유동 370-4 호 범하주택㈜ 배백애, 김길현	도봉구수유동 190-9 호 범하주택㈜ 김대천, 김길현
사업위치	도봉구수유동산 61-4 라 4 필지	도봉구수유동 310-15 호외 6 필지
사업면적	4,627	5,247.90
사업규모	단독주택 1층 24 동 24 세대	연립 3층 5 동 66 세대 다세대주택 5 동 27 세대
사업시행기간	'87. 3 ~ '87.12	'88. 6 ~ '89. 6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내역

1. 사업주체 : (주)자양주택 이종호외 1인
2. 사업위치 : 중랑구중화동 18번지 2호외 1필지
3. 사업량 : 연립주택 3층 3동 57세대
4. 사업비 : 1,685,820,000
5. 호당규모 및 사업비 : 별첨
6. 재원
 - (1) 국민주택자금 : 천원
 - (2) 금융자금 : 천원
 - (3) 입주자부담금 : 천원
 - (4) 사업주체자금 : 1,685,820 천원
 - (5) 주택은행민영자금 : 천원
 - (6) 기타자금 : 천원
7. 사업기간
 - 착공 : 1988. 5.
 - 준공 : 1989. 5.

8.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 별첨
9. 조건 :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50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6.

서울특별시강

다 음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신진종합건설(주) 대표 김봉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758-2 나. 면적: 2,049.80㎡ 다. 규모: 연립 3층 1동 36세대 4. 사업시행기간: '88.6.3 ~ '89.1.30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승인 번호	
			88-4	
사업주체	상 호	신진종합건설(주)	등록번호	82-9
	대표자	김 봉 수	영업소재지	관악구신림동527-3
설 계 과	성 명	임 수 상	자 격	건축사
	주 소	강서구화곡동1117-13 개인건축사사무소		
공 사	성 명		자 격	
시 공 자	주 소			
사 업 계 획	사업위치	양천구목동758-2	용 지 도 역	주거지역, 주차장지리지구
	사업내용	대지면적	건축면적	주 택 형 별
		2,049.80 ㎡	3,056.22 ㎡	연립 3층 1동 36세대
	사업기간	착 공 에 정 일 자		준 공 에 정 일 자
'88. 6. 3		'89. 1. 30		
승인조건	별 칩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				
1988년 6월 일 시 울 특 별 시 장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1. 사업주체 : 신진종합건설(주) 대표 김봉수 2.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758-2 3. 건설규모 : 연립 3층 1동 36세대 평형 : 아래참조 4. 내지면적 : 2,049.80㎡ 5. 건축연면적 : 3,056.22㎡ (전체율 : 36.58%, 용적율 : 105.90%) * 국민주택규모 : 100% 6. 사업비 : 1,599,000천원 8. 세대당 규모					○ 종별 : 대 지 비 930.60(천원) 주택건축비 591,936(천원) 부대, 복리시설설치비 76,364(천원) 일반분양시설설치비 천원 간선시설설치비 천원 ○ 책원별 : 사업주체자금 1,599,000(천원) 국민주택자금 천원 민영주택자금(금융기관) 천원 기타자금 천원 7. 사업기간 : 착공 : '88년 6월 3일 준공 : '89년 1월 30일				
구 분	계	전 용 면 적	용 용 면 적	비 과 고					
27.64평형	91.38㎡	55.44㎡	35.94㎡	3세대					
25.85 "	85.44㎡	55.44㎡	30.00㎡	27 "					
24.00 "	79.20㎡	52.20㎡	27.00㎡	6 "					
9.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계획									
부 대 시 설		복 리 시 설							
종 류	설 치 계 획	종 류	설 치 계 획						
도 로	단지내 : 미터 지입도로 : 6미터	어린이놀이터	1개소 119.31㎡						
삼·하수도	단지내 : 개소 단지외 : 개소	운 동 장	-						
전 기	세대별 : 4킬로와트 (전력저장설치기)	비상저수시설	54톤이상						
통신시설	공중전화 1대 (세대별인입선 1개소)	공원녹지시설	단지면적의 15%이상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취사용)	* 공천시설	6개소						
우편시설	우편수취함 세대별 1개	노 인 정	-						
보안등	5등	판 매 시 설	-						
관리사무소	-㎡	기 타	의료시설 : - 공중목욕탕 : - 체육시설 : -						
공공시설	-								
안내표지판	-								

승 인 조 건

신청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758-2번지

1. 착공계 제출시 정제복원 륜량 (외적공사시행)을 실시하여 성과도를 철부토록 하고 인접토지를 침범치 않도록 할것.
2.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진반에 대한 구성 (분야별) 공사감독권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것.
3. 운벽은 건축감리자의 감독을 받을 것이며 준공검사원 제출시에는 공정별 공사중 사진과 완료사진을 첨부 할것.
4. 운벽 물때기 배수공은 지름 5cm이상의 것으로 1미터 간격으로 배열할것.
5. 공사전반에 대한 시공은 시공관리 자격이 있는 성실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것.
6. 각종 제품은 등록업자가 생산한 규격제품을 사용할 것.
7. 위사용 도시가스 시설은 관계규정이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고 시공완료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득할것.

8. 본 지역은 출수불량 지역이므로 관의규정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급수가 가능토록 할것.
9. 진입로의 폭은 6미터로 확보하고 준공전까지 포장완료할 것이며 도로상의 철주 (3개)는 6미터 도로변으로 이설할 것.
10. 착공10일전까지 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환경청 도시 제 87-4 호에 의거 우리구에 "비산분진 발생원 설치신고"를 득할것.
11. 공중전화 1대를 단시내 설치할 것.

◎서울특별시고시제 512 호

보 호 수 지 정

산림법 제 67 조 및 동부시행령 제 4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1988. 6. 8.

서울특별시장

(보호수 지정내역)

지정번호	기원종류	수종	주수	수 목			
				나이	수고	흉고둘레	수면직경
1-33	시나무	느티나무	1주	500년	15m	53Gcm	18m
1-48	구나무	은행나무	1주	500년	20m	310cm	18m

소 재 지		소 유 자	
종로구 신영동 240-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p>◎서울특별시고시제 522 호</p> <p>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 및 쇠고기 기준연동가격표 고시</p> <p>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85-47 호, '85.8.22) 제 8 조 및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돼지고기 연동가격과 쇠고기 기준연동가격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1988. 6. 13.</p> <p>서울특별시 장</p> <p>1.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고기(정육 500g 당) 4,100 원 돼지고기(정육 500g 당) 1,650 원</p> <p>2. 쇠고기 기준연동가격표: 다음</p> <p>3. 시행일: 1988.6.15 부터</p> <p><u>쇠고기 연동가격표(3)</u></p> <p>(단위: 원)</p>		지육경락가격(kg당)	적용연동가격(500g당)
		5,400	4,250
		5,500	4,300
		5,600	4,400
		5,700	4,450
		5,800	4,500
		5,900	4,600
		6,000	4,550
		6,100	4,750
		6,200	4,800
		6,300	4,850
6,400	4,950		
6,500	5,000		
<p>◎서울특별시고시제 523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8 번지 2 호의 1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1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8. 6. 8.</p> <p>서울특별시 장</p>		지육경락가격(kg당)	적용연동가격(500g당)
		5,100	4,000
		5,200	4,100
		5,300	4,150

- 1. 사업명: 중화동 연립주택신축공사
- 2. 사업주체: ㈜자양주택 이종호외 1인
- 3.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
가. 위 치: 용산구 중화동 18번
지 2호의 1필지
나. 대지면적: 2,267.94㎡
다. 규 모: 연립주택 3층 3동 57세대
- 4. 사업기간: 1988.5. - 1989.5.

구 고 시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 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

-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3 호 (88.4.19)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 가 1 번지일대 성심학원의 음악실 및 생활관 증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변경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장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6.3.

용 산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 가 1 번지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
사업의 명칭: 성심학원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대지면적: 24,876㎡
2) 기존 건축연면적: 9,303.51㎡
3) 당초 건축연면적: 617.88㎡ (생활관 및 음악실)
4) 변경 건축연면적: 716.15㎡ (지상 1층 - 지상 3층)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1)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 가 1 번지
2) 성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김 재 순
- 마. 사업기간: 88.4 - 88.12.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생략)





◎노원구고시제 143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6 호 (88.3.

<p>28)로 시설 결정되고 동고시 제289호(88.4.20)로 지적 승인된 노원구 월계동 541-1 외 2필지상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제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5. 노 원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노원구 월계동 541-1 외 2필지</p> <p>나. 사업종류: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p> <p>사업명칭: 상신교통㈜ 사무실 및 기숙사 신축</p>	<p>다. 사업규모</p> <p>(1) 시행면적: 4,074㎡</p> <p>(2) 건축면적: 477㎡</p> <p>(3) 연면적: 1,001㎡</p> <p>라. 사업시행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68-5 상신교통㈜ 대표이사 한권환</p> <p>마. 사업기간: 88.6-89.6.30</p> <p>◎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하 천 점 용 변 경 허 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변경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6. 9 한 강 관 리 사업 소 장</p>
--	--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 용 면 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8.6.9.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177번지선 (한강)	하천	414.28㎡ (당초252.28㎡ 추가162㎡)	수상법당 및 부속 바지선설 치	1988.1.13 -1989.1.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177번지	대한불교 방생법회 회장 : 이길호

공 고		인		
<p>◎서울특별시공고제 1 호</p> <p>회계관계공무원 지인등록 및 폐기(안)</p> <p>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등록 및 폐기 신고하고 동규칙 제 11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 6.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장</p> <p>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88.6.11 2. 사용직인: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사업과 분임 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시현과 분임 물품출납원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관리계 분임 물품출납원 3. 폐기직인: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분임 물품출납원</p>		업		
공 인 명	서울특별시녹지사 업소 관리계분임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녹지사 업소 분임물품출 납원인	<p>◎서울특별시공고제 34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종 전기공사사업업정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공사사업법 제 29 조제 2 항의 규 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사업을 다 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88. 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인				
공 인 명	서울특별시녹지사 업소 사업과분임 물품출납원인	서울특별시녹지사업 소 시현과분임물품 출납원인		

- 다 - 유 -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영업경리기간
제 282 호	법 한 기 업	영등포구 당산동 1 가 55	한삼기	1988.6 ~ 1988.7
제 627 호	삼우전기공사	영등포구 당산동 3 가 270	이철희	.

◎서울특별시공고제 34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9 호('87. 11.12), 지적고시 52 호('88.1.25), 지적고시 54 호('73.4.20) 고시된 사항 2 구역 진입로 개설공사의 1 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인가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지장물) 소유자와 공 랑 개 요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련 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가. 공람장소: 동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88.6 ~ '88.

1988. 6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적수및 준공예정일	시설결장및 지적승인 근거
사당동 266-1-708-400	사당 2 구역 진입로개설 공사	B=20 m L=24 m	서울특별시	인가일 - 88.12.31	도시계획시설결정 서고 799호(87.11.12) 지적고시 52호(88.1.25)
사당동 250-20-250-53	제일아파트 진입로도로 개설공사	B=6 m L=77 m	"	"	도시계획시설결정 서고 54 호(73.4.20)

1. 수용 또는 사용토지, 건물(지장물)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 권리의 명세: 생략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

소, 성명: 생략

3. 기타사항: 의견 갖 응제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352 호

투기과열지구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제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88. 6. 7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41-1 의 6 필지
- 2. 면 적 : 26,578.2 ㎡
- 3. 아파트명 : 교척동 서울가든아파트
- 4. 규 모 : 아파트 13 층 5 동 715 세대
- 5. 사업주체 : 삼익건설산업 대표 문정열

◎서울특별시공고제 362 호

환경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율 위한 공람공고

- 1. 김포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변경위치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 조 및 제 56 조 규정에 의거 환경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코자 동법 제 38 조 규정에 의거 14 일간 일반에게 공람에 공하며

- 2. 환경계획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입니다.
- 3.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8. 6. 12
서울특별시장

가. 환경계획 변경내용

- 1) 사업명 : 김포토지 구획정리사업
- 2) 변경면적 : 19,760.5 ㎡
- 3) 변경필지수 : 81 필
- 4) 변경위치 : 강서구청 입구~원

당 4 지리간 공방로변다. 변경사유 : 주변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서울특별시공고제 363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영업정지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2 항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 6
서울특별시장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사항	영업장기간
963	진흥전기	중구무학동 50-1	하태선	전기공사업법 제7조2항	영업정지 (90일)	88.6.10~ 9.10

◎서울특별시공고제 365 호

비료생산업 일부품목 허가취소

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와 비료단속업무 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품목허가 취소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8.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비료의 종류	미달성분명	보 증	분 석	미 단
제3종 복합비료 10-0-8	구용성고토	2%	0.65%	67.50%
제3종 복합비료 6-14-12	수용성분소	0.5%	0.027%	94.60%
	구용성고토	3%	0.86%	71.33%

◎서울특별시공고제 367 호

제2종 전기공사업 행정처분공고

전기공사업법 제39조제2항3호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엿기 통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1988.

서울특별시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423	대동전력 공 사	오재길	마포구지교동 445-4	전기공사업법 제33조제1항	영업정지 30일 (88.6.15 ~ 88.7.14)

◎서울특별시공고제 368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호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8.

서울특별시장

다 음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개 지	취 소 사 유
620	서산전기	조정진	마포구 하수동 5-13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제 2 항 위반 (연허기한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371 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
어 시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고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
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 6. 13.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취 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 12403 호, '88.2.
24), 건설부 건축조례 준칙 개정

(건축 30420-4670 호, '88.3.17)
및 민선 편의도모를 위한 불합
리한 건축규제 조정등 전반적인
개정

3. 주요내용 : 별첨
4. 의견제출 :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1988. . . 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
(참조:건축지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탈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
명과 대표자명)

건 축 조 려 개 정

(주 요 내 용)

가. 용 적 율

- 강.남북 통일된 기준 적용
-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조정
- 간선도로변 교도 토지이용을 반영한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단위: %)

지 역	현 행	법령상 허용범위	조 려 개 정 안	비 고
전용주거지역	강북: 70 강남: 80	50-100	80	
일반주거지역	강북: 250 강남: 300	200-400	300 (노후 30m 이상 350%)	
준주거지역	강북: 450 강남: 500	300-700	500 (노후 30m 이상 600%)	
중심상업지역	-	700-1,300	1,200	
일반상업지역	강북: 900 강남: 1,000 + 매몰대: 670	500-1,100	1,000	
근린상업지역	-	350-900	700	
전용공업지역	강북: 200 강남: 300	150-300	300	
일반공업지역	강북: 200 강남: 300	200-350	300	
준공업지역	강북: 200 강남: 300	200-400	300	
보전녹지지역	-	50- 80	60	
생각녹지지역	150	100-200	150	
자연녹지지역	60	50-100	60	

나. 도시설계구역내에서의 조성제도화 ○ 도시설계에 따른 개발 유도 불 위하여 우리시 건축조례 ○ 용적율의 완화폭		에 의하여 지정된 용적율의 제한을 법상 최대 한도내에서 완화 허용함으로써 개발 촉진 (단위: %)	
지 역	법 상 기 준	일 반 기 준 (거 정 후)	완 화 폭
전용주거지역	50-100	80	20
일반주거지역	200-400	300 (노폭 30 m이상 350)	100 (노폭 30 m이상 50)
준 주 거 지 역	300-700	500 (노폭 30 m이상 600)	200 (노폭 30 m이상 100)
중심상업지역	700-1,300	1,200	100
일반상업지역	500-1,100	1,000	100
근린상업지역	300-900	700	200
전용공업지역	150-300	300	-
일반공업지역	200-350	300	50
준 공 업 지 역	200-400	300	100
보존녹지지역	50- 80	60	20
생산녹지지역	100-200	150	50
자연녹지지역	50-100	60	40
기 타	200-400	-	-

<p>— 포상원칙 —</p> <p>법상 규정된 기준이외에 도시설계 지침상 추가적으로 규제된 건축 제한사항에 따라 산술적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제한 : 5/100-20/100 · 투시형 담장등 : 10/100 (산정방법) · 완화목 X 포상비율의 합 = 완화 한도 · 시행기준과 완화한도의 합은 법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상비율은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 		
<p>○ 용적율 포상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사업구역 : 50/100 · 공동 개발 : 30/100 · 최고층수제한 : 20/100 · 벽면선에 관한 제한 (건축한계선등) : 5/100-20/100 				
<p>다. 대지면적 최소한도</p>				
<p>원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필지 건축물의 재축, 개축,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협상범위중 최고값을 지정 ○ 여타의 기준은 현행기준 유지(신시가거등 특정지구는 기준 강화) 		
<p>○ 대지면적 최소한도 (개축, 재축, 용도변경의 경우) (단 위 : ㎡)</p>				
지 역	현 행	현행상범위	조 례 개 정	비 고
건용주거지역	200	150-300	200	
일반주거지역	90	60-180	60 (특정지구 165)	
준주거지역	90	70-200	90	
중심상업지역	-	300-900	300 (특정지구 660)	
일반상업지역	200 (대로변 330)	150-500	150	
근린상업지역	-	150-300	150	
전용공업지역	330	200-400	330	
일반공업지역	330	200-400	330	
준공업지역	200	150-300	200	

지역	현행	법령상범위	조계개칭	비고
보전녹지지역	-	350-900	350	
생산녹지지역	200	150-300	200	
자연녹지지역	600	350-700	600	(기존부락350)

<p>라. 건축물 부설 예술장식품 규정의 세련화</p> <p>원칙</p> <p>건축법 개정 시행령(영지 15 조(5))에 미술장식품 설치가 의무화되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규정을 세련화</p> <p>(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물의 범위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 회화, 벽화, 부조, 판화, 공예, 서예, 분수등 이와 유사한 환경조형물 ○ 미술품 설치대상 건축물(제외 용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모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및 공장용 제외 ○ 미술품의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용 100억 - 건축비용의 1/100 · 건축비용 100억초과분 - 건축비용의 0.5/100 (건축비용은 용지비를 제외하고 지급자세를 포함한 공사 총액정금액) ○ 미술품 가액평가 및 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로부터 계약서의 제시 요구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품 관리대상 작성 비치 ·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예술품을 임의로 이동 또는 철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마.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미관지구내 모든 건축물(단독, 다세대주택 제외) · 건축물이 미관지구내 철거지 않더라도 대지의 일부면이 미관지구내 결철 경우는 전대지에 대하여 심의의무화(신청) ○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미관지구내 점포겸용 단독주택 허용 · 준공업지역 미관지구내 공장, 창고시설 허용 · 전미관지구내 동물관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장 불허 ○ 대지면적 최소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기준유지, 단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지정된 미관지
--	--

구에 대해서는 200 ㎡로 완화	
구 분	대지면적최소한도(㎡)
제 1 종 미관지구	600
제 2 종 미관지구	300
제 3 종 미관지구	300
제 4 종 미관지구	200
제 5 종 미관지구	250
구 분	높이 제한
제 1 종 미관지구	5 층 이상
제 2 종 미관지구	3 층 이상
제 3 종 미관지구	폐 지
제 4 종 미관지구	폐 지
제 5 종 미관지구	폐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기준유지, 단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완화 규정 신설 	
건축물층의 수	건축면적(㎡)
3층	150 ㎡
4-5층	200 "
5-10층	300 "
11-15층	500 "
16층이상	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투리땅등 기준미달 대지의 경우는 위 제한을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 풍치지구안의 건축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추가 - 안마시술소, 200 ㎡미만 제조장, 연면적 200 ㎡미만의 유기장 · 허용용도 추가 - 자연녹지지역내 풍치지구는 자동차 강습소및 차고 허용 	

사. 교육 및 연구 지구안의 건축제한
 ○ 안마시술소, 제조장, 유기장 등 신축불허용도 추가

◎서울특별시공고제 380 호

다동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65 호(86.11.29)로 사업시행인가된 다동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유성건설(주)대표 최승진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별 시행변경인가(시행기간연장)신청이 있다 동법 제 15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안인제해 보일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토지소유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할것이다.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8. 6. 16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시행기간연장) : 기타 변경 없음.

· 기정 : '86.11.29-'89.8.31

· 변경 : '86.11.29-'90.8.31

나. 공람기간 : '88.6.17-'88.7.16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사 령

5 급 공 무 원 파 견

◎ 1988 년 5 월 18 일 자

령 제 16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수 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파견 (88.5.18-89.5.17)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유 원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파견 (88.5.18-89.5.17)	"	"

기 능 직 공 무 원 징 계 처 분

◎ 1988 년 5 월 20 일 자

령 제 171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권 위 경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전기장

기 능 직 공 무 원 면 직

령 제 172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용 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교 통 과	지방운전원

6 급 이하 기 술 직 공 무 원 징 계 처 분 취 소

령 제 173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흥 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의 결정 (사건 83-5 88.4.29) 에 따라 '83.2. 11 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한강관리사업소 "	지방토목기사

성 명	발 명 사 함	원 부 서	직 급
백 동 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건 88-5.88.4.28)에 따라 '88.2.11 자 견재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인 사 발 원 통 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문홍선	지방토목기뢰역 임함	경제 184 호 89.5.2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대	전출을 명함 입함 88.5.26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토목기뢰	고승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박희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대	전출을 명함 입함 88.5.26	지방토목기뢰역 임함	83.5.26
동작구 근무를 명함		양천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정연찬	서울특별시 건축기뢰	정유승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대	전출을 명함 입함 89.5.2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지방건축기뢰역 임함	88.5.26
서울특별시 토목기뢰	고인석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사회경화위원회의 제 4 부	
		행정사무관	김서봉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86.5.26
			백 동 현

◎ 1988년 6월 1일자 7급 공무원 신규임용 명제 18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김숙자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학 전자계산소 근무를 명함		신규
6급보건직공무원 파견 명제 18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안영주	서울지방경찰청 파견 (88.6.1-88.11.4)		내부국 지방보전기사
5급공무원 파견 명제 18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정연찬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파견 (88.6.1-88.12.31)		내부국 지방행정사무관
◎ 1988년 5월 31일자 4급공무원 직위해제 명제 188호			
이종목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충로구시민국장 지방서기관
◎ 1988년 6월 1일자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명제 19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박장규	시장비서실 (6호봉)	지방별정직 7급상당	신규
이결관	경찰국면허과 전산처리사 (4호봉)	"	"
윤영미	" 전산처리사 (2호봉)	"	"
◎ 1988년 5월 31일자 지방별정직공무원 면직 명제 19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박운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 1988년 5월 1일자 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령제 192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일호 정훈	강동구 파견 (88.6.1-89.5.30) 동부병원 파견 (88.6.1-89.5.30)	동부병원 강동구	지방보건의사보 지방보건의기원
기술직공무원 경고처분 령제 19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연현기	불문경고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도로과	지방전기기사
6급기술직공무원 직위해제 령제 19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갑원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
6급이하공무원 특별임용 령제 19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기세호 박태석 최정식 조두라 손경선 엄재용 김판준	행정주사 " 행정서기 " " " 행정주사보	양정과 " " " " " 농축과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서기 " " "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6월 3일자 보건연구관 신규임용 령제 19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양기숙	지방보건연구관시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할 보건관경연주소 근무를 명함	신규	

◎ 1988년 6월 4일자 기능직 공무원 전보 및 파견				령제 19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지호	남기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동부건설사업소	지방기계장 (7등급)	
이근구	"	차량정비사업소	" (7등급)	
박병흠	"	동부건설사업소	지방기계원 (8등급)	
양재현	" 파견 (88.6.4-88.12.31)	안양리수처리장	지방기계장 (7등급)	
홍봉식	" 파견 (88.6.4-88.12.31)	탄천하수처리장	지방기계원 (8등급)	
◎ 1988년 6월 3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및 파견				령제 19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유상호	등작구	내무국	행정사무관	
박대현	"	"	"	
진주영	중구	용산구	지방행정사무관	
유지중	은명구 파견(88.6.3-88.8.31)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과	
강승선	한강관리사업소 파견 (88.6.3-88.8.31)	내무국	지방전기기과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령제 20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정호섭	행정과파견(88.6.3-88.12.31)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조관호	" (")	총무과	"	
최대성	" (")	투자관리담당관	"	
유재곤	" (")	명동포구	"	
정동열	" (")	중구	"	
전석진	" (")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근수	" (")	도로과	"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안병기	행정과파견(88.6.3-88.12.31)	울림역기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선영	"	관악구	"
정영길	"	강남구	"
김지철	문화담당관파견(88.6.3-88.12.31)	관악구	지방행정주사
김정오	"	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조	"	노원구	"
김택배	"	구로구	지방행정서기
이상덕	"	노원구	"
이상린	운수1과파견(88.6.3-88.6.30)	은평구	지방행정주사보
손계국	"	구로구	"
진명식	"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차치경	"	성북구	"
엄상구	울림역기뢰담당관파견 (88.6.3-12.31)	은평구	지방행정주사보
윤세기	" (")	관악구	"
문형욱	서립대학교파견(88.6.3-88.11.16)	성북구	"
인사발령통지			
구무총리행정조정실 제3행정 조정판실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 담당관	
성기관		탁병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할 명함		서기권	
지방서기관에 임함		원세훈	
서울특별시 대통령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직무대리물 명함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실 근무를 명함	
88.5.31		88.5.31	
대통령		대통령	
© 1988년 6월 3일자 B급기술직공무원 파견 명세 202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원태	총무과파견(88.6.3-88.12.2)	한강패리사립소	지방전기지원

© 1988년 6월 10일자 기 능 직 공 무 원 신 규 임 용 영 제 203 호				
성 명	발령부서	발령호봉	발령 직 급	비 고
정 해 순	총 무 과	4 호 봉	지방운전원시보 (기능직 10등급)	신 규
박 완 식	"	4 "	"	
김 천 용	"	4 "	"	
양 도 석	"	4 "	"	
이 천 희	"	3 "	"	
김 영 일	"	3 "	"	
홍 영 철	"	4 "	"	
황 호 성	"	7 "	"	
이 면 우	"	4 "	"	

© 1988년 6월 3일자 6 급 이 하 공 무 원 특 임 임 용 영 제 205 호			
성 명	발령 사항	원 부 서	직 급
박 재 흥	지방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노 수 만	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
황 달 수	"	"	"
박 일 선	"	"	"
김 용 배	"	"	"
이 계 원	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보
백 조 종	"	"	"
손 석 인	"	"	"
한 병 서	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
신 제 국	"	"	"
최 순 일	"	"	"
이 경 숙	"	"	"
신 현 호	"	"	"

◎ 1988년 6월 7일자 건축직 6급이하 공무원 전보령제 30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안상구	건축지도과	강서구	지방건축기사	
황병혁	강서구	새중문화회관		
유영근	새중문화회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조재호	봉로구	육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건축기사보	
의료직공무원 신규임용원안보령제 207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위(호봉)	발령직급	비고
김소자	서초구보건소	보건소장(7호봉)	지방의사	시, 구
이용근	중랑구 "	" (5호봉)	"	"
윤현숙	강서구 "	보건지도과장(8호봉)	지방의사시보	"
이경열	중랑구 "	" (7호봉)	"	"
이성애	송파구 "	" (6호봉)	"	"
김재복	양천구 "	" (5호봉)	"	"
윤길자	서초구 "	" (5호봉)	"	"
서경숙	동작구 "	" (4호봉)	"	"
유병자	노원구 "	" (4호봉)	"	"
최은주	도봉구 "	" (7호봉)	"	"
성영자	구로구 "	"	지방의사	내부국
◎ 1988년 6월 8일자 4급이하 공무원 파견령제 29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학재	한강관리사업소파견(88.6.8 ~별도지시시까지)	종합건설본부	지방시설기술	
여용운	"	"	지방토목기사	
남승운	"	"	"	
김석우	"	"	지방토목기사	
노창수	"	"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서성기	한강관리사업소파견(88.6.8- 별도지시시까지)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서광기	"	"	"
박재권	"	"	지방토목기사보
김기혁	"	"	"
송재룡	"	"	"
이구선	"	"	지방토목기사보
이상배	"	"	"
김경호	"	"	지방토목기사보
이보현	"	"	지방행정주사
김종한	"	"	지방행정주사보
서혜연	"	"	지방타자원
한형록	기획관리실 파견해제 한강관리사업소 파견(88.6.8~ 별도지시시까지)	"	지방토목기사보
토목직 8 급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 1988년 6월 9일자			령제 20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임영준	'86.7.25자 파면처분을 내법원판결 (사건 88누780,'88.5.10)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은경구 근무를 명함	판악구	지방토목기원
◎ 1988년 6월 8일자 이글이하 공무원 파면 제 21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홍권	울림박준비단파견(88.6.8~ 별도지시시까지)	전자계산소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훈	"	내무국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상범	올림픽준비단파견(88.6.8- 별도지시서까지)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황병권	"	은평구	"
김원영	"	세무지도과	"
유종모	"	성북구	행정주사보
한설만	"	서울대공원(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태영	"	세무지도과	"
이형재	"	관각구	지방행정서기
국가 및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경제 211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상호	지방입업기사	농지과	입업기사
최선수	입업기사	은평구	지방입업기사
◎ 1988년 6월 13일자 간호직 공무원 전출 경제 212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황덕현	경상북도 안동군 진출을 명함	시립 동부병원	지방간호사
◎ 1988년 6월 8일자 6급이하 공무원 파견 경제 21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광석	문화담당관파견(88.6.8-88.12.31)	구로구	지방행정주사
강탁원	" (")	종로구	"
김중남	" (")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장내인	" (")	송파구	"
이형희	" (")	영등포구	"
이동명	업무담당관파견(")	은평구	지방행정주사
이종교	" (")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이병수	" (")	영등포구	"
전구하	" (")	성동구보건소	"

인 사 발령 통 지		명제 214 호
문화공보부 예술국 전홍파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운영과
행정주사	유상호	행정주사 박대현
행정사무원에 임함		행정사무원에 임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88.6.1	내무국 근무를 명함 88.6.1
		대 불 령

◎ 1988년 6월 9일자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및 천보 명제 21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태 일	구의수원지 고압가스 지방별정 관리기사 7급상당		신 규
노 덕 환	김포수원지 " "		"
신 순 일	노당진수원지 " "		"
김 석 진	영등포수원지 " 지방별정 8급상당	구의수원지	지방별정 8급상당
강 미 정	부내보호소 영 향 사 지방별정 7급상당		신 규
전 은 실	남부군로 지도교사 " 청소년회관		

◎ 1988년 6월 13일자 7 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명제 21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수 경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 (88.6.13-88.10.10)	공업시험소	지방거제기사보
박 봉 식	교동국. 운수 2과. 파견 (88.6.13-88.12.31)	중 랑 구	지방거제기사보

간 호 직 공무원 파견 명제 21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광 회	동각구보건소파견 (88.6.13-89.5.31)	양천구보건소	지방간호사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노영희	양천구보건소과전 (88.6.13-89.5.31)	동작구보건소	지방간호사
◎ 1988년 6월 9일자 5급 공무원 겸직 명계 21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연수	용지제강 검지을 명함	주덕기획과	지방행정사무원
◎ 1988년 6월 10일자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명계 21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진연	교동기뢰파과전(88.7.1-별도 지시 시까지)	회계과	지방행정주사
황청래	" (88.6.10- ")	영등포구	"
권백오	" (")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최영수	사회과과전 (")	용산구	"
장승순	윤림직관리담당관과전(88.6.10-별도 지시시까지)	구로구	지방행정지기
◎ 1988년 6월 9일자 지방별정직 공무원 면직 명계 22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태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수원지	지방별정직 8급상당
노덕환	"	김포수원지	"
심순일	"	노량진수원지	"
권은선	"	남부근로청소년회과	"
◎ 1988년 6월 13일자 7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명계 22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양경석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과전(88.6.13-10.10)	종합전철본부	지방건축기사 보시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성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파견 (88.6.13-88.10.10)	성동구	지방건축기원
이길형	문화당당판 파견 (88.6.13-88.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보 시보
조성길	치수과 파견(88.6.13-88.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시보
1988년 6월 11일자 4급 공무원 전보 령제 22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완	올림픽시설건설관 직무대리에 입함	종합건설본부 공사1부장	지방시설기정
2급 공무원 전보 령제 22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수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에 입함	올림픽시설건설관	지방시설기정
인사발령통지령제 224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유삼호		인사발령통지령제 2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입함 88.6.11 동작구 근무를 명함	시설기감 최중무 원에 의하여 그직을 전함 88.6.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박대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입함 88.6.11 동작구 근무를 명함	관리관에 입함 최중무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장에 보함 88.6.11		
	대통령		

◎ 공무원의 여행 명령사관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소 속	직급(직위)	성명				
부자 관리관실	부자관리관 (지방 부이사관)	김주일	서울시-동경도간의 자매결 연 우호관계 수립을 위한 회의 참석	러어키 (파리)	88.5.23 -5.30 (8일간)	서비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은평구	이사관 (구청장)	김완중	호주켄터베리시와 은평구간 의 자매결연식 참석	호주 (러국)	88.5.2- 5.10 (9일간)	서비
"	지방행정 주 사	이길영		일본)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소 속	직 급	성명				
육동지구 개발 사업소	지방공업 기 정	최성삼	지역난방선진기술습득 및 조 달구배기기 검사차	스위스 독 일	88.6.13- 6.22	초형차 부담 (서비)
"	지방기계 기 사 보	김상경	"	"	"	"
"	"	영광재	"	"	"	"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소 속	직 급	성명				
종합건설	지방건축 사	이규락	세계장애자 스포츠기구	영 국	88.6.15	서비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 행 국	여 행 기 간	경 비
소 속	직 명	성 명				
본 부	기획 개발건축 기 사	김영근	국제 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6.22 (8일간)	
여 행 자			여 행 목 적	여 행 국	여 행 기 간	경 비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재무국	이사장 (국장)	박순철	제9차 아시아 태평양시장 회의(PACOM) 참석	하와이 호놀룰루	88.6.18- 8.24 (7일간)	시비
시정개발 담당관실	지방행정 사무관 (시정연구 계장)	이정환				
서울특별시						